

■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[별표 4]

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(제2조제1항제4호관련)

1. 우수사업장의 인정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우수사업장의 인정	100,000	1. 1품목을 기준으로 하며,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1품목당 30,000으로 한다. 2. 인정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품목 당 30,000으로 한다.

2. 확 인

가. 제조확인

(단위 : 원)

구 분		수수료	비 고
특 수 재 질 선 박 의 선 체 (톤)	5톤미만	13,660	
	5톤이상	27,340	
내 연 기 관 KW(PS)	22 (30)미만	23,680	
	22 (30)이상~ 37 (50)미만	33,680	
	37 (50)이상~ 55 (75)미만	48,810	
	55 (75)이상~ 74(100)미만	58,770	
	74(100)이상~ 110(150)미만	83,740	
	110(150)이상~ 148(200)미만	108,710	
	148(200)이상~ 184(250)미만	123,630	
	184(250)이상~ 368(500)미만	183,340	
	368(500)이상	314,790	

나. 정비확인

(단위 : 원)

구 분		수수료	비 고
내 연 기 관 KW (PS)	22 (30)미만	35,520	
	22 (30)이상~ 37 (50)미만	50,520	
	37 (50)이상~ 55 (75)미만	73,210	
	55 (75)이상~ 74(100)미만	88,150	
	74(100)이상~ 110(150)미만	125,610	
	110(150)이상~ 148(200)미만	168,060	
	148(200)이상~ 184(250)미만	185,440	
	184(250)이상~ 368(500)미만	275,010	
	368(500)이상	472,180	